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515호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9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구리휴게소 진입로)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① 구분	② 종류	③ 노선 번호	④ 노선명	⑤위치	⑥면적	⑦ 기점	⑧ 종점	⑨주요 통과지	⑩총연장 (km)
변경	고속 국도	제100 호선	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	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	280.0㎡	경기도 구리시 사노동	경기도 구리시 사노동	경기도 구리시 사노동	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

- 구리휴게소 진입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

- 2009 ~ 2011년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1	경기도 구리시 사노동	170-12	임	1,620	280	조**	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617 어빈 휘슬러코트	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가. 열람장소

-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

(주소 :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, 전화번호 : 02-2084-1741)

나. 열람기간 :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

6.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

연번	노선명	소재지	변경사항	비고
1	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00호선)	경기도 구리시 구간	도로구역(변경)결정	

7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.

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